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안내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급비율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총 74 세대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면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청약 자격	<p>■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p> <p>- 최우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p> <p>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 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p> <p>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기존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p> <p>■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p> <p>①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p>
유의사항	<p>※ 과거 특별공급 1회 사용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없음</p> <p>※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료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p> <p>※ 재당첨 제한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할 수 없음</p>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청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이 있거나,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